

보다 안전한 미래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우)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수서동, 로즈데일오피스텔 1828호) / Tel 02-567-1307/ Fax 02-567-1337
www.assi.or.kr E-Mail : assi1307@naver.com 담당 : 박용복부장 (H·P) 010-8688-5619

문서번호 시험 2019 - 90호

시행일자 2019. 3. 7.

수 신 서울교통공사사장

참 조

선			지	
결			시	
접	일자		결	
	시간		재	
수	번호		공	
처	리	과	람	
담	당	자		

제 목 정액적산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용역 용역비 부담금액 증지 요청

1.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공사에 감사드립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용역(이하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6조 계약의 원칙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하며, 계약당사자 모두 신의성실의 원칙과 부당특약금지의 원칙을 준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계약 상대방의 계약상 불이익을 부당히 제한하거나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계약 특수조건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 46885)

3. 그리고 공공계약은 ‘확정계약’ 이 원칙으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2조, 제86조에 따른 “개산계약 및 정산”,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4. 「지방계약법」 에 따르면 총액입찰에 의한 용역은 계약 목적물을 확정하여 총액으로 계약 체결함을 원칙으로 대가기준에 따른 정액적산방식에 의해 필요한 비용을 인건비로 환산하는 방식이고 계상된 인원은 계약 목적물을 만들기 위한 수단

이므로 내역서 상 인원을 반드시 투입해야 하는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5. 따라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총액입찰로 발주하는 용역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완성하여 성과품에 문제가 없다면 투입인원과 투입비용의 과다, 과소에 관계없이 계약대로 준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그러나, 일부 지방기관에서 ‘갑’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실투입 인력을 확인하거나 계약서에 특약조건으로 삽입, 정산하는 사례가 있으며 심지어는 직접경비에 대하여도 무리한 정산요구를 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9. 2. 18.(월)에 발표한 국무조정실의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첫 번째 해당 사항으로서 국가기관의 관련자에게는 성과가 될지 모르지만 법의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영세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안전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서는 총액입찰에 의한 용역비가 부당하게 감액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